

『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 
**제안 설명**

□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‘중증장애’라는 용어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정도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, 조례 제명 가운

데 ‘중증장애의원’이란 표현이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주기 때문에 이를 ‘장애를 가진 의원’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또한,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  
조례 제명을 ‘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’로 변경하고,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‘장애정도’로 수정했습니다.
-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 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운영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